

인천광역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10. 29(금)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0. 10. 4

나. 제안자 : 박승희 · 박순남 · 이용범 의원의 20인

다. 회부일자 : 2010. 10. 4

라. 상정일자 : 2010. 10. 26(제18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 인천광역시의회 박승희 의원
- 검토보고 : 문화복지전문위원 유한경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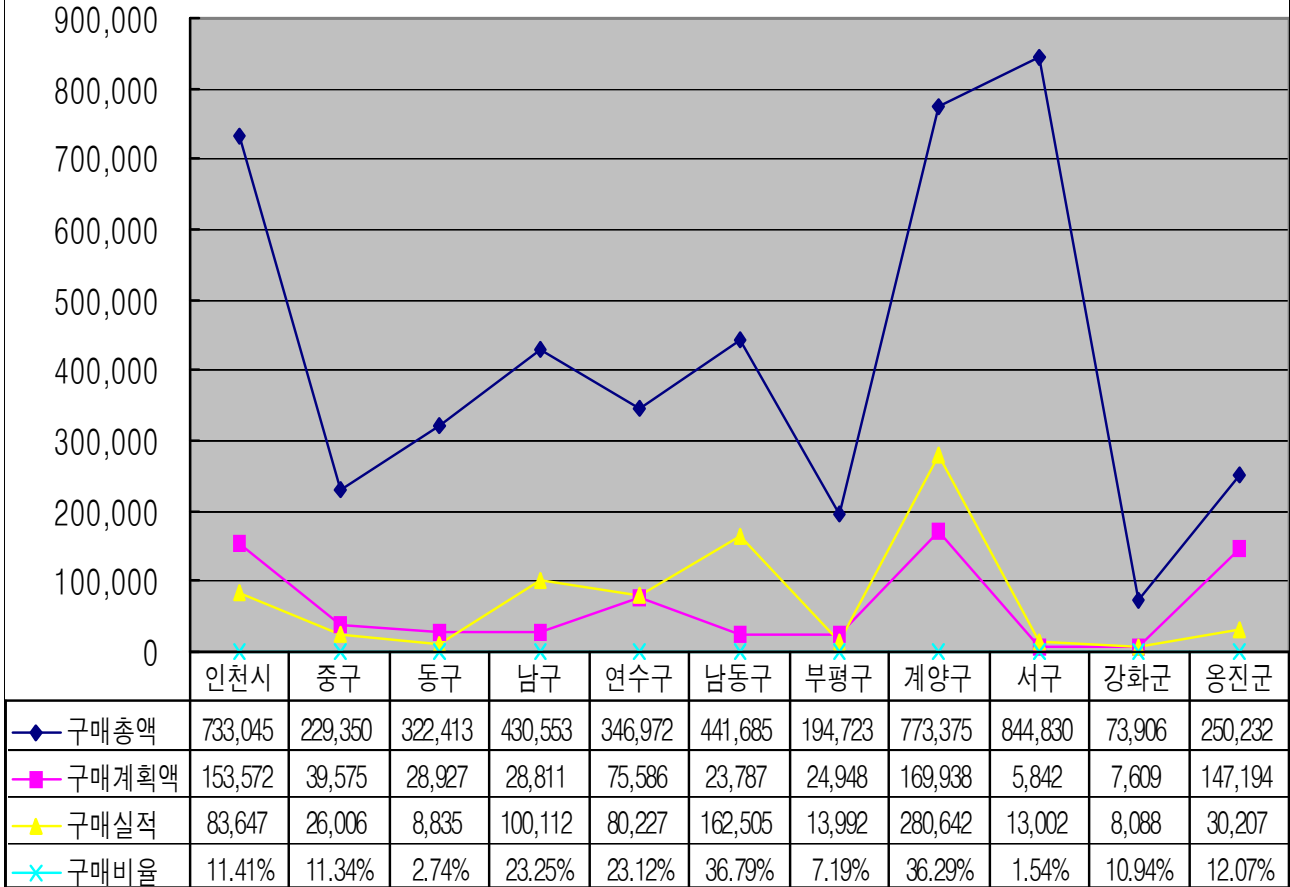
-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필요한 지원 및 시책 추진과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등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7조)
-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해야 하는 대상기관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 우선구매 이행계획에서 정한 품목과 물량을 기준으로 우선구매 대상 물품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기술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에 우선구매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인천광역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복지 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지역내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촉진과 구매대상시설 및 기타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2010년 10월 4일 박승희·박순남·이용범의원 3인이 공동 발의하여 같은날 회부됨.

'09년도 장애인 생산품구매현황
(단위:천원)



※ 자료출처 : 장애인복지과

- 2009년도 장애인생산품 구매현황을 보면 인천광역시의 경우 제조 및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은 7억 3,300만원이며,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8,364만 7천 원으로 총구매액의 11.41%, 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액 대비 54.46%임.
-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통해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맞춰 시차원에서 일반인에 비하여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고용 촉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 판단됨.

타 시·도 조례제정 현황

시 도 명	조 례 명	제정일	비 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조례	'09. 7.30	장애인복지법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 근거
경 기 도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조례	'08.12.30	장애인복지법에 근거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09. 8. 3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
강 원 도	강원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조례	'07.12.28	장애인복지법에 근거
경 상 남 도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09. 7. 2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
전 라 북 도	전라북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09. 4. 24	장애인복지법에 근거

2. 주요내용

가. 제4조 (시장의 책무)

- 시장은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함.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조문의 제명은 간결성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책무”로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나. 제5조 (우선구매 대상기관)

-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 시가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규정하여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여 사용토록 하였음

우리시 우선구매 대상기관 현황

구 분	대 상 기 관
사 업 소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 인천대학교, 중부·남동·부평·서부·공단·계양·남부·강화소방서
직속기관	경제자유구역청, 상수도사업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서부여성회관, 종합문화예술회관, 동부공원사업소, 서부공원사업소, 미추홀도서관, 시립박물관,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서울사무소, 수산사무소, 수산종묘배양연구소, 녹지관리사업소
출연기관	인천의료원, 경제통상진흥원, 정보산업진흥원, 인천발전연구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송도테크노파크, 인천종합에너지(주)
출자(투자)기관	교통공사, 인천메트로, 시설관리공단, 관광공사, 도시개발공사, 환경공단

나. 제6조 (우선구매 대상물품)

-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1)에서 규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과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제2항2)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로 한정하였으며, 동 시설로부터 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함.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8조(생산품 구매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물품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해당 물품의 최종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할 것. 이 경우 다른 업체 등에 하도급을 주거나 위탁하여 생산하거나 물품의 부품만을 생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물품의 생산과정에 장애인 5명 이상이 참여할 것

3. 물품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70 이상이 장애인일 것[「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 1명은 일반장애인의 1.5배수로 산정한다]

2) 제2조(정의)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0.1.18>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현황

연번	시설명	대표자	소재지	생산품목	근로장애인	비고
1	예림일터	김병관	인천 부평구 부평6동 633번지	종이컵	27명	
2	핸인핸	장영순	인천 부평구 부평6동 633번지	칫솔류, 재생토너 카트리지	79명	
3	인정재활관	홍인식	인천 서구 석남3동 491-1번지	형광등기구, 경관조명 배선용꽃음첩속기	25명	
4	해내기보호작업장	손광훈	인천 연수구 동춘동 산 29-1번지	장갑류, 두루마리 화장지	37명	
5	장봉혜립보호작업장	이한형	인천 옹진군 북도면 창봉1리 105-1	아쿠아젤리향초	30명	
6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카트리지사업장	최성중	인천 계양구 서운동 52-9	재생토너카트리지	5명	
7	비전엔보호작업장	윤충진	인천 남구 관교동 469번지	천연비누	6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연번	시설별	시설명	종사자수	근로인수	생산품	비고
1	근로시설	핸인핸	14명	73명	칫솔, 카트리지	
2	"	우리마을	16명	96명	콩나물, 상추	
3	보호직업시설	중구장애인 보호직업장	4명	20명	콘센트조립	
4	"	길벗회	3명	15명	매실원액	
5	"	광명원	4명	30명	방향제	
6	"	미추크린센터	4명	30명	세탁	
7	"	모퉁이	2명	14명	종이	
8	"	해내기	5명	40명	휴지, 면장갑	
9	"	열린일터	4명	31명	비즈공예	
10	"	남동크린센터	9명	30명	세탁	
11	"	굿프랜드	4명	40명	문구조립	
12	"	성동	4명	40명	용기사출	
13	"	비전엔	3명	20명	콘센트조립	
14	"	예진원	3명	30명	운동화세탁	
15	"	두드림	3명	20명	제빵	
16	"	장봉혜립	4명	30명	아쿠아향초	
17	직업활동시설	애호일터	3명	30명	병오프너	
18	"	어울림카페	2명	10명	음료판매	
19	"	예림일터	3명	25명	종이컵	
20	"	송암	3명	23명	콘센트조립	
21	"	노들담	3명	30명	콘센트조립	
22	"	인정재활관	3명	30명	등기구 제작	
23	직업훈련시설	안마수련원	3명	3명	안마수련	

다. 제7조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 매년 소요물품중 품목과 물량, 우선구매물품 및 구매목표율 등을 포함한 우선구매 이행계획수립에 관하여 규정함.
- 안제5조에서 우선구매대상기관을 규정하였고 안제7조에서 대상기관들의 이행계획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입법체계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안제6조”를 “안제7조”로 “안제7조”를 “안제6조”로 배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라. 제9조 (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 생산시설에 대한 제품개발, 산·학협력과 기술적 지원사항 등 재정적 지원과 유통·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 현재 시에서는 직업재활시설 및 판매시설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제도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나 구매율은 저조한 실정으로, 산학협력을 통한 제품개발과 기술적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생산품의 품질향상과 제품의 경쟁력 제고로 판매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됨.

우리시 지원사업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 종사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지원 ※ 1개소 : 남동구 장수동 소재	138,413천원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운영	-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 사업규모 : 23개소	3,459,829천원	
장애인직업재활 시설기능보강	- 장비구입 및 시설개보수 ※ 사업규모 8개 (신축2,개보수1, 장비보강5, 임차료지원 1)	2,398,542천원	

마. 제11조 (포상)

- 시장은 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포상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나
- 공공기관 및 단체의 업무평가지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항목을 반영하여 평가하는 등 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평가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록현황

(2010. 9월말 기준 단위 : 명)

장애유형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130,538	11,136	17,865	22,531	20,357	27,316	31,333
지 체	72,074	2,179	4,052	9,738	14,076	21,354	20,675
뇌병변	12,514	3,361	3,449	3,166	1,269	803	466
시 각	12,889	1,736	388	752	799	1,011	8,203
청각	13,368	398	2,551	2,324	3,082	3,024	1,989
언어	946	-	74	415	457	-	-
지적	7,428	2,325	2,506	2,597	-	-	-
자폐성	803	445	229	129	-	-	-
정신	4,231	282	1,657	2,292	-	-	-
신장	3,298	190	2,537	-	61	510	-
심장	473	22	81	350	-	20	-
호흡기	815	161	214	440	-	-	-
간	370	24	41	53	5	247	-
안면기형	146	3	25	48	70	-	-
장루·요루	678	1	11	75	244	347	-
간질	505	9	50	152	294	-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

○ 강병수·박순남 의원

- 장애인생산품의 낮은 품질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제품에 대한 인증 제도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견해는 ?

< 답 변 >

○ 보건사회국장 최경환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품질인증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 품질인증의 기준 및 인증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됨.

5. 토론요지

가. 찬성 : 없음

나. 반대 : 이강호, 안영수, 신현환, 강병수, 박승희, 박순남, 이용범위원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 7명)

7. 기타 특이사항

○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제목 “(시장의 책무)”를 “(책무)”로 한다.

안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제7조”를 “제6조”로 한다

안 제7조를 제6조로 한다.

안 제8조 제2항중 “제7조제1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공공기관 및 단체의 업무평가 항목에 장애인생
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p>	<p>제4조(책무) 《제정안과 같음》</p>
<p>제6조(우선구매 대상물품) ① 시장은 시 지역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우선구매 이행계획에서 정한 품목과 물량을 기준으로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44조제2항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p>	<p>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정안 제7조와 같음》</p>
<p>제7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장애인복지법」 제44조제1항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그 소요물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의한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p>제7조(우선구매 대상물품) ① 시장은 시 지역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수립한 우선구매 이행계획에서 정한 품목과 물량을 기준으로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제정안 제6조제2항과 같음》</p>

인천광역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
2.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장애인복지법」 제44조제1항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그 소요물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물품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 대상물품) ① 시장은 시 지역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수립한 우선구매 이행계획에서 정한 품목과 물량을 기준으로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44조제2항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8조(우선구매 의무) ①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2조에서 정의한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6조제1항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9조(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① 시장은 관내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구매 협조요청) 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 등과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여 판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및 포상) ①시장은 공공기관 및 단체의 업무평가 항목에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